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. 3. 20 선고 2024가단132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3. 2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,
나. 1,173,160원과 이에 대하여 2024. 1. 1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다. 2024. 1. 5.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,34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 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무변론판결)

판사 이유빈

별지